◉기획재정부공고 제2023-76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 9. 11.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일부 품목은 제외 함.
-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20%~36.98%로 함.

3.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ㅂ리 키계칭	기차 이 기하게저브	홈페이지(<u>http://www.moef.go.kr</u>)	[비런 , 이번센크, 세계
**			몸페이시(<u>nttp://www.moer.go.kr</u>)	'협영 → 합합에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